

서 문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리히텐슈타인공국·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방(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라 한다)(이하 집합적으로 “당사국들”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존재하는 중요한 유대를 고려하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이러한 유대를 강화하고, 이로써 긴밀하고 영속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하며,

자유무역지대가 당사국들의 영역에서 보다 확장되고 확고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창설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이로써 세계시장에서 당사국의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확신하며,

국제연합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당사국들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특히 유럽과 아시아 간,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고 보다 넓은 국제적인 협력에 대하여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을 결의하며,

무역과 투자 흐름의 확대를 통하여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실질소득의 크고 지속적인 증가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협정이 당사국들 간 경제·무역 및 투자 관계를 촉진하는 환경을 창출할 것임을 확신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이에 따라 협상된 그 밖의 협정(이하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한다)과 당사국들이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협력에 관한 그 밖의 다자·양자적 합의문서상의 각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기반으로 하며,

무역자유화가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라는 목적에 따라 세계자원의 최적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함을 인식하며,

위 내용을 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총 칙

제 1.1 조

목 적

1.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 지대를 창설한다.

2. 시장경제 간 무역관계에 기반을 둔 이 협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1994년도 GATT”라 한다) 제24조에 합치되게 상품무역의 자유화 및 촉진을 달성한다.

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GATS”라 한다) 제5조에 합치되게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달성한다.

다. 당사국 경제에서의 경쟁, 특히 당사국들 간 경제적 관계에 관련된 경쟁을 촉진한다.

라. 당사국들의 정부조달 시장의 상호적인 추가 자유화를 달성한다.

마. 국제적 기준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확보한다. 그리고

바. 이러한 방식으로,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투자흐름의 증가를 이끄는 환경을 개발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한다.

제 1.2 조

지리적 범위